

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위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 위촉의 합리화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 위촉규정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하며 이에 관한 사무관리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12.1.)

제 4 조 (자격) ① 시간강사는 만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

1.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해당 교과목을 전공한 자.
2.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초급대학 및 대학에서 1년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강의한 유 경력자.

② 제 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학과장의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과목의 성질상 교육 및 연구경험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2. 학력미달자라 할지라도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될 경우

제 5 조 (구비서류) 시간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1. 이력서 및 사진 1매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매
3. 근로계약서 1부. <별지 1>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

제 6 조 (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1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 (보수) 위촉한 시간강사에게는 그 출강 시간수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무) 시간강사에 위촉된 자는 맡은 바 강의에 대하여 성실히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간의 제한)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9시간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총장은 15시간 미만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제 10 조 (위촉의 시기) 시간강사는 담당과목의 개강일시 1주일 전까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

제 11 조 (보 칙)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09.12.1.)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계약서

강원관광대학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시간강사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용직급)

“을”은 “을”을 “본 대학”의 외래교수(시간강사)로 임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을”의 임용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제3조(담당시간) “을”은 계약기간 중 _____에서 주당 _____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제4조(강사료 및 지불방법)

① “을”의 임용 계약기간 의 보수는 시간당 _____원으로 하며, 매월 5일에 지급한다.

② 주당 _____h 미만인 경우의 교통비는 주당 _____원을 “을”에게 별도 지급하며, _____h이상인 경우의 교통비는 주당 _____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 본 대학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을”의 보수에서 공제 납부한다.

제5조(휴일 및 휴가) “을”은 정해진 강의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이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라 “을”은 별도로 보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강의 장소와 업무) “을”은 “갑”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제3조에서 정한 주당 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제7조(강의일과 담당시수) “갑”과 “을”은 시간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강의 요일과 담당과목을 정하며, 주당강의시간은 제3조를 따른다.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한 위촉관련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간강사는 매학기 개강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계약조건) ① “을”은 본 대학의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제7조에서 정한 담당강의를 제외한 재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M/T 등 학과단위의 행사에 따른 학생 현장지도, 대학 입시업무 등의 별도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④ “을”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으로 한정하며, 강의준비시간, 성적산출 및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제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⑥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본 대학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계약서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강원 관광 대학 총 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학과(강의학과) :

연 락 처: